

RIS사업단 운영규정

(제정 2023. 10. 1.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(RIS) 사업(이하 “지역혁신사업”이라 한다)을 수행하는 RIS사업단(이하 “사업단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)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지역혁신사업의 추진 방향, 사업예산, 사업내용 등 주요 사항 기획 지원
2. 지역혁신사업의 공유대학 교육과정 운영 지원
3. 지역혁신사업의 소과제 주관 학과 또는 참여 학과의 행·재정적 지원
4. 지역혁신사업의 자율과제 기획 및 운영 지원
5. 지역혁신사업의 성과평가 및 환류
6. 그 밖에 지역혁신사업에 관한 사항

제2장 조직

제3조 삭제 <2024.2.1.>

제4조(사업단장) ① 사업단에 사업단장을 두며, 사업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② 사업단장은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역할 및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업단을 대표하며,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
2. 사업단 예산 편성 및 집행, 보고
3.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인력의 임용추천 및 근무평정
4. 사업단 내 시설 및 공간 관리
5. 사업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
6. 사업결과의 보고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
7.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수행

제5조(사업단 행정지원) 지역혁신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단에 책임교수, 팀장, 행정인력을 둘 수 있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6조(설치) 지역혁신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7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된다.

③ 교무부처장, 학생취업부처장, 기획부처장, 산학협력부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그 밖의 위원은 사업에 참여하는 학과 교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, 간사는 지역혁신지원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. <개정 2024.2.1.>

제8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한다.

1. 사업단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
2. 지역혁신사업 운영에 필요한 교내외 의견 수렴 및 환경 분석
3. 지역혁신사업의 성과분석 및 환류
4. 사업단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

5.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사항

제4장 재정 및 회계

제9조(재정 및 회계) ① 사업단 재정은 국고지원금으로 한다.

② 사업단 재정은 본교 회계의 별도 지역혁신사업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한다.

③ 사업단 회계는 지역혁신사업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